

◆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-180호

왕십리 재정비촉진지구 지정해제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
1.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5-158호('15.6.11)로 지정된 왕십리 재정비촉진지구 내 모든 재정비촉진사업(왕십리뉴타운제1~3구역, 주택재개발정비사업)이 2017.08.31.로 완료됨에 따라,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「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」 제7조 제2항 및 제7항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를 해제 및 고시하며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2. 아울러, 준공인가(이전고시)가 완료된 촉진구역은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84조 제1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하고, 「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」 제13조의2 제2항에 따라 준치관리구역은 종전 왕십리뉴타운 지구단위계획으로 환원·관리됩니다.

2019년 6월 7일
서울특별시 장

1. 왕십리 재정비촉진지구 지정해제

명칭	유형	위치	면적(㎡)			해제사유
			기정	변경	변경후	
왕십리 재정비촉진지구	주거지형	성동구 하왕십리동 440일대	337,200	감)337,200	-	재정비촉진구역내 모든 촉진사업이 완료되어 재정비촉진지구 지정목적 달성

2. 재정비촉진구역 및 준치구역 지정해제

구분		구역명	면적(㎡)	사업방식	비고
기정	촉진구역	왕십리뉴타운제1구역	100,419.6	주택재개발사업 (사업완료)	특별계획구역1 (2016.8.25. 이전고시)
		왕십리뉴타운제2구역	68,953.1	주택재개발사업 (사업완료)	특별계획구역2 (2016.3.24. 이전고시)
		왕십리뉴타운제3구역	136,293.9	주택재개발사업 (사업완료)	특별계획구역3 (2017.8.31. 이전고시)
변경	준공인가(이전고시)된 촉진구역(1~3구역)은 정비사업 이전고시 다음날부터 해제된 것으로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				
기정	준치관리구역	청계천로변구역	11,716.0	지구단위계획	지구단위계획 결정 (2004.5.31.)
		마장로 등	19,817.4	-	-
변경	종전 왕십리뉴타운지구단위계획으로 환원				

3. 재정비촉진지구 해제 조건부여(조치)

-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되는 사항은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과 정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향후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반영

4. 관계도면

- 시민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주택건축본부(주거사업과 ☎02-2133-7226) 및 성동구(주거정비과 ☎02-2286-6564)에 비치하고 있습니다
- 붙임 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.

붙임

1. 재정비촉진지구 결정(기정)도



2. 재정비촉진지구 결정(변경)도

